

초기 한일회담(예비~제3차)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의 교섭과정 분석: 한일 양국의 교섭목표와 전후 '재일성'(在日性) 형성의 논리

장 박 진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재일한국인들이 짊어지게 된 '재일성'(在日性)은 전후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그 성격이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은 한일회담의 교섭과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일성'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는 점령 하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초기 한일회담에서의 교섭과정 연구는 공개된 자료의 한계도 작용해서 여태까지 불충분한 상황에 머물러 왔다고 해야 하겠다.

본 논문은 소위 북송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제3차 한일회담까지의 토의 내용을 한일회담 공식문서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재일성' 형성에 영향을 준 초기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이 한일 양국의 어떤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논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담 개시 전 한국 측은 병합조약 무효를 뜻하는 한국국적 '회복'이라는 첫 번째 국가정체성으로부터의 정책적 과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고는 한일회담 개시 후의 초기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당정부라는 두 번째 국가정체성과 재일한국인을 일본에 계속 거주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양립시킬 것, 한편 일본 측은 외국인으로 된 재일한국인들의 재류 제한과 그를 위해 무엇보다 요망된 퇴거강제 관한 확보를 각각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실증하여 그로 인해 1965년에 귀결된 '재일성'의 윤곽이 이미 초기 한일회담의 교섭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음을 밝힌다.

주제어: 초기 한일회담, '재일성',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당정부, 일본 거주권, 퇴거 강제 권한

I. 문제제기

국제적 선례와 달리 국적선택권이 상실됨에 따라 거주 자격을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심지어는 동일한 역사성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한국’과 ‘조선’ 국적에 따라 재류자격이 상이했다는 등 전후 재일한국인들이 지게 된 ‘재일성’(在日性)은 전후 한일관계의 특수한 정치성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 형성된 것이 한일회담의 성격과 그에 따른 교섭내용으로 인한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따라서 그런 ‘재일성’ 형성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의 교섭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위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앞서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이하 “대응 분석”)에서 선행연구들이 공백으로 남긴 한일회담 개시 전의 한국 측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동 “대응 분석”이 밝혔듯이 한일회담 개시 전의 한국 측의 관심은 국적선택권 부여 방식의 봉쇄를 통한 재일한국인들의 한국국적 ‘회복’과 재일한국인들의 본국 송환 방지를 뜻한 일본 측 퇴거강제권의 봉쇄에 모아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광복 이전부터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첫 번째 국가정체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동 “대응 분석”에 이어 소위 북송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제3차 한일회담까지의 초기 한일회담에서 과연 무엇이, 왜 논의되고, 또 그들 토의 내용이 어떻게, 왜 변했는가, 등을 한일회담 공식문서를 통해서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재일성’ 형성에 작용한 초기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이 결국 무엇으로 인해 결정되었는지를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점령 하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초기 한일회담에서의 동 문제의 교섭과정 연구는 공개된 자료의 한계가 있어

1. 본고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고 함은 ‘조선’ 국적도 포함하여 일본거주의 한반도 출신자 전체를 뜻한다.

지극히 미흡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공식문서 공개 전에 열람 가능했던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飛田雄一, 1980: 4-7; 김태기, 1997: 제6장 제2절; 정인섭, 1996: 제2장 제3절; 박진희, 2008: 제3장 제1절; 吉澤文寿, 2005: 제1장 제2절).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동 문제에 관한 초기 한일회담의 교섭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동 교섭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² 그러나 ‘재일성’ 형성에 영향을 준 초기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일견 지엽적으로 보이는 사항들도 포함한 교섭과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런 전체적인 교섭과정에 대한 분석만이 양국 정부에게 동 교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초기 한일회담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중기 한일회담 이후의 교섭 내용들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불가결한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는 위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한일회담 개시 후의 교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당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가정체성이 요구하는 과제와 재일한국인들의 퇴거강제를 봉쇄하는 과제를 양립시킬 필요성을 둘러싸고 결정되었음을 실증하고 65년에 귀결된 ‘재일성’의 틀이 이미 초기 한일회담에서 주어지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예비회담 개시부터 제1차 회담까지의 교섭

1. 국적문제의 변화

1951년 10월 20일 한일회담은 예비회담으로서 개시되었다. 예비회담은 어

2. 기타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 관련 글로서는 도노무라(2005)가 있으나 이것 역시 회담 진행에 따른 재일한국인들이나 일본사회의 반응을 고찰한 것이므로 회담 교섭 자체를 분석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디까지나 이후의 본격적인 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한일회담은 재일한국인 문제의 처리를 이유로 시작된 것인 만큼 다른 의제들과 달리³ 동 문제는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다음 제1차 한일회담 시의 논의를 포함해서 합계 36차례에 걸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1차 분과위원회는 10월 30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수치적 동향이나 일본 측 간행물 중의 ‘한국인’, ‘조선인’ 표기에 관한 질의응답 등 개략적인 의견교환만이 이루어졌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66~674).⁴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된 10월 31일의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인식이 피력되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75~685).⁵ 그 핵심은 대일평화조약 발표로 인해 재일한국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하나 현재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근거는 병합조약의 법적 효력과 그 후의 출생자에 관해서는 관습법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측은 현재 재일 한국인 중 생활보호 수급자가 약 5만 5,000명 정도 있으며 계속 수급할 경우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됨을 밝혔다. 교섭 벽두로부터 일본 측은 병합조약의 합법성과 재일한국인들의 퇴거강제가 자신들의 관심사임을 토로한 것이었다. 위의 일본 측 의견 표명에 대해 한국 측은 다음 제3차 분과위원회(11월2일)에서 총론적인 의견 표명을 행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
3. 다만 선박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토의가 이루어졌다.
 4.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의 중 외국인등록자가 553,430명, 미등록자 가 10만~20만 명 정도, 또 ‘조선인’, ‘한국인’ 표기는 한국 측 주일대표부와 스캐프(SCAP)으로부터의 ‘한국인’ 사용요구가 있었으므로 원칙 ‘조선인’으로 하되 ‘한국인’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등록상의 동 명칭 표기는 그 본인이 남북 어느 정부를 지지하는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한일회담 문서에는 복수의 쪽 수 표기가 있으나 이하 공식문서의 쪽 수 표기는 저자가 임의로 하나만 택해서 명시 하도록 한다.
 5. 본론 이외에도 동 위원회에서는 조련(朝聯) 관련 의 학교폐지와 교육 문제도 거론되었다.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86~711). 한국 측은 병합조약으로 인한 일본국적 취득은 1945.8.9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으로 실효하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으로 한국국적 취득, 동년 12월의 한국국적법 시행으로 국내조치는 완료했음을, 따라서 영토변경에 따른 국적선택 부여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⁶ 재일한국인을 이하 세 가지로 나누어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 (1) 1945. 8. 9 이전 거주자
- (2) 1945. 8. 10 이후 합법입국자
- (3) 1945. 8. 10 이후 불법입국자

한국 측은 이상의 분류 중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해서는 평화조약과 상관 없이 외국인등록적용과 참정권 등의 시민권을 뺀 내국민대우 부여를 조약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영주권, 귀환의 자유, 같은 대우의 자손들에 대한 파급, 재산권, 경제활동의 보장, 생활보장 등이 그 내용들이었다. 이들 주장은 “대응 분석”에서 밝힌 10월 8일자 한국 측 제1안 ‘전반적 국적 회복의 경우’(장박진, 2009: 234)에 제시하던 방침을 실제 일본에 제시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그에 대해 포츠담선언 수락과 한국건국에 따라 재일한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되었으나 스캐피 전후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재일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한 것, 또 대만인의 중국국적 인정과 달리 재일한국인의 국적은 미결로 한 것들을 들어 재일한국인의 국적은 평화조약까지 일본이며 그 후의 국적은 평화조약 후에 결정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일회담이 시작하자마자 나온 국적문제에 관한 토의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적문제의 성격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대응 분석”에서 논의했다시피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 측은 병합조약의 불성립을 뜻한 한국국적의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 스캐피로서 인한 해결에 심혈을 기울

6. 동 회의에서 한국 측이 국적선택권을 요구한 듯한 기록이 있으나(『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06) 이것은 일본 측의 국적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임시응변적인 대답에 불과하며 한국 측 진정한 요구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였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국적 취득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일 직접 교섭에 들어가자마자 한국 측은 포츠담선언 수락 시까지 재일한국인들의 일본국적 취득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⁷ 즉 국적문제는 병합조약의 성립에 따른 일본국적 취득 여부로부터 일본국적 상실 시기에 옮긴 것이었다. 그러면 왜 한국 측은 한일교섭 개시 후 한일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견해를 나타낸 것인가? 그 이유는 이하의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일회담 개시 후 한국 측 교섭의 무게가 한국국적 확정 후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퇴거강제권 봉쇄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⁸

실제 동 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내국민 대우 요구에 대해 다른 국가가 최혜국대우를 요구할 경우 곤란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동 한국 측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자 한국 측은 동 대상자가 입국 시는 ‘일본인’으로 입국했다는 근거를 대며 다른 일반외국인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평화조약 발효 후 외국인이 됨으로써 그 이후의 권리 제한과 무엇보다 퇴거강제 권한의 확보를 노리던 일본 측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 측은 다른 외국인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때 ‘일본인’이었다는 근거를 이용한 것이었다.⁹

이렇듯 한국 측은 1945.8.9일까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으로나마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재일한국인의 내국민대우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보다 주목되는 점은 이하

-
7.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측 위무성도 재일조선인의 일본국적 상실에 관해 쌍방 합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外務省, 1953: 20).
 8. 초기 한일회담으로부터 관여하던 김동조는 예비회담에서의 국적문제 토의를 ‘조선’에 대한 ‘한국’국적 확정 문제에 한정해서 진술하고 있다(김동조, 1986: 28-29). 그러나 동 토의는 공식 기록상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약간 토의된 것에 불과하며 이하 보듯이 토의의 중심은 국적문제와 일체화된 영주권 부여 = 퇴거강제 봉쇄 문제에 있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9. 사실 한국 측은 한일 회담을 앞둔 1951년 10월 8일자 사전 요강에서 이미 “일본국은 1945. 8. 9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한일합변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자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승인한다”(『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 5-9』: 368)고 정하고 일본국적 취득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승인하였다.

고찰해 나가듯이 그런 내국민대우 요구의 근거에는 재일한국인들의 일본거주 정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이다.

그런 한국 측 의도는 ‘일본인’으로서 입국한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대응에도 이미 나타났다. 사실 한국 측은 동 회의에서 1945. 8. 10 이후 불법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보호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고 생활이 안정된 자는 계속 거주시킬 것, 특히 6.25 후 입국자는 난민구제로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한국 측은 그 역사성과 상관없이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자의 계속적 일본 정주의 희망을 교섭 초기부터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응 분석’에서 논했듯이 한일회담 개신 전 한국국적 ‘회복’에 그 핵심이 있던 국적 문제는 국적선택권 부여로 인한 일본국적 취득 가능성이 사라진 후 시작된 한일회담에서는 재일한국인들의 거주권 확보를 위한 문제로 그 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 예비회담 본회의 보고서

이상과 같이 제3차 분과위원회까지 총론적인 토의가 교환된 후 제4차(11월7일), 제5차 분과위원회(11월 9일) 토의를 통해서 재일한국인 문제의 주제에 관해 각 논점들의 윤곽이 어렵פות이나마 드러났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된다.

<표 1>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국의 동 문제에 대한 태도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측은 전전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인은 그 존재 자체가 특수한 것인 만큼 다른 일반외국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대해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외국인과 같이 다루나 각 구체적인 취급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특례로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제6차 분과위원회(11월 12일)에서는 예비회담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양국 합의점의 정리가 이루어졌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표 1> 제4차, 제5차 분과위원회 토의에서 나타난 각 논점

	한국 측 주장	일본 측 주장
일본 국적 이탈 시기	포츠담선언 수락으로 인하여 병합조약 실효했으므로 그 때 일본국적 이탈.	스캅에 의한 법적 조치가 없으므로 일본법령에 따라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평화조약 발표 시 이탈.
영주권 부여	-전전 거주자: 무조건 부여. -전후 합법적 입국자: 출입국관리령 적용. -전후 불법입국자: 인도적 조치 희망.	-출입국관리령은 모든 재일한국인에 적용 방침. -다만 다음 편의제공의 의사는 있음. ·신청비용 2000엔은 고려. ·절차는 특례를 고려.
대우	전전 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자가 아니므로 평화조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성격이 아님. 따라서 내국인 취급을 받아야 함.	-일반외국인과 같은 취급. -평화조약 12조로 인한 4년간의 최혜국대우는 적용. -일본국민과의 완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하면 됨.
강제퇴거	전전 거주자: 폭력혁명 기도자만 대상.	-모든 재일한국인에 관리령 24조를 적용. 다만 귀화하지 않는 자를 모두 퇴거시킬 의도는 없음.
기득권	전전 거주자: 원칙 내국인과 같은 권리.	현행법상 외국인에 금지되어 있는 권리 중 재일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불편함은 없음. ¹⁰
영주귀국 시의 재산반출	-국적선택권이 아니므로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재산의 자유처분, 후대의 인정. -반출에 관해 일절 비과세 및 무제한.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자에 대해 일반외국인의 귀국 시와 구별할 필요는 없음. -수출무역관리령 중의 ‘직업용품 4000봉도(封度)’ 기준의 완화를 검토.

자료: 다음 자료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12~726(제4차 회의록), 727~732(제5차 회의록)).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33~745). 동 위원회에서도 일단 원칙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일본 측이 40년의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이례사실을 영구히 파급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해 다른 외국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령이나 환 관리령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 한편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 문제가 일반 외국인과의 특례문제가 아니라 특수외국인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한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때까지의 논의 성과로서 양국 합의점을

10. 당시 외국인에 금지되어 있는 권리 및 자격은 참정권, 공무원, 은급, 일본선박의 소유, 광업권, 무선국 개설, 이민취급업, 수선(水先)업, 공중인, 변리사, 일부 주식취득, 일부 재산취득, 생활부조(扶助) 등이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83-884).

이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신분관계 변동을 인정할 것.
- 퇴거 시 재산반출을 원칙으로 인정할 것.
- 영주허가는 무리한 표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
- 퇴거장제를 일거에 다수를 추방하지 않을 것.
- 기득 현유 재산권을 인정·보장할 것.

한국 측 역시 위 양해점을 문서화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동 문제에 관한 논의는 착실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11월 14일 오전에 열린 제7차 위원회에서는 양국 양해점을 기초로 일본 측이 13일자로 작성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초안 “일한회의 소위원회에서 양국대표 간에 견해의 일치를 본 점에 관하여”가 제출되며, 그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측 초안 중의 요점과 그에 대한 한국 측 견해는 이하와 같다.

<표 2>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일본 측 초안과 한국 측 견해

		일본 측 초안	한국 측 견해
국적	1	어느 사람이 자국민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와 일치하는 한 각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는 원칙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평화조약 최초의 발효의 날까지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그날부터 일본국적을 상실한다는 일본정부의 견해에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 -일본은 1948. 8. 15의 대한민국수립과 함께 재일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한국 측 견해에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	일본 안으로는 1948. 8. 15로부터 평화조약 발효 날까지 2중국적으로 되며 한국 측은 이를 인정할 것은 없다.
	2	전기 1의 적용 상 한국인의 범위를 정하는 데 양국은 혈통주의의 원칙에 선다. 다만 종전 전에 생긴 신분상의 이동을 기존 사실로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평화조약 최초의 효력 발생 날까지 한국인과의 신분법상의 행위로 인해 일본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는 한국인의 신분을 가진 것을 한다. -평화조약 최초의 효력 발생 날까지 일본인과의 신분법상의 행위로 인해 일본의 호적에 들어간 한국인은 한국인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	‘평화조약 최초의 효력 발생 날’이라는 어구는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국적 상실 시기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함.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52~755(일본 측 초안), 746~751(한국 측 견해)).

<표 2>를 보면 이는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 국적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대립점은 결국 평화조약의 표기문제에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평화조약을 명시함으로써 병합조약으로 인한 일본국적 취득과 평화조약으로 인한 동 국적의 상실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일본 측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한국 측 대립을 뜻했다. 그러나 평화조약의 규정에 반대한 한국 측 의도가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에 따른 일본국적 취득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곳에 있지 않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점은 1948. 8. 15의 대한민국 건국에 따른 한국국적 취득 해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본 측 타협안에 대한 한국 측 견해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측은 동 일본 측 타협안에 대해 그 해석이라면 그날부터 평화조약 발효까지 2중국적이 될 것을 문제로 삼았을 뿐이었다. 즉 병합조약 원천 무효로 인한 일본국적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한국 측이 섰다면 2중국적 운운이라는 반대 자체가 아예 성립될 리가 없으므로 동 한국 측 견해는 결과적으로 일본국적 소유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이유 역시 그 시기를 막론하고 재일한국인들의 일본국적 이탈에 따른 일본거주권을 확보하는 데 한때 일본국적 소유자였다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일본 측은 기타 영주권, 퇴거강제, 대우, 귀환 시의 재산반출에 대한 특별 취급에 관한 양해사항의 초안도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내부 조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동 초안은 철회되고 있다.¹¹ 동 위원회의 기록은 일본 안 철회에 따라 비교적 추상적으로 표현된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으므로¹²(『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758) 다음 17일의 제9차, 그리고 20일의 제10차 분과위원회를 거쳐 영어로 작성된 본회의 보고서는 한국 측 안을 토대로 한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보고서의 요점은 이하와 같다.

11월 22일 열린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8차 본회의 기록은 법적지위 분과위

11. 철회된 초안은 다음 문서로 보인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60~763).

12. 그러나 이 초안 자체는 수록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표 3> 본회의 보고서의 요점

	한국 측 주장	일본 측 주장
국적 확인	한국인과의 신분상의 행위로 인해 일본호적에서 제외된 자는 한국국적 소유자로 하여 역으로 일본호적에 들어간 한국인은 일본국적 소유자로 한다.	
영주권 부여	종전 이전으로부터의 일본거주의 한국인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영주권 부여. 출입국관리령 적용은 전후 입국자에만 한정.	모든 재일한국인에게 출입국관리령을 적용. 다만 영주권의 조건, 절차, 수수료 등은 일시적 특례로서 고려.
대우	참정권 등 국민고유의 권리라고 인정되는 것 이외는 계속 내국민 대우가 필요.	내국민 대우는 상호주의와 국제원칙에 따라 앞으로 통상항해조약에서 검토. 다만 이번 일본국적 상실에 따라 '일본인'으로서 향유한 특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치를 검토.
귀환 시의 재산반출	자유처분, 무제한, 비과세.	마약, 밀수 등은 제한.
강제퇴거	폭력으로 인한 일본정부 전폭을 기도한 자를 빼고 출입국관리령에 기초한 퇴거조항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하나 선량한 한국인에 적용할 의도는 없음. 따라서 대량 추방은 없다.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번역,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69~772).

원회로부터 공동보고서가 상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위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동 회의록은 한국국적 취득과 일본국적 상실을 평화조약 발효 시로 하는 일본 측과 포즈담선언 수락으로 해방되었다는 한국 측 주장만을 전하고 있을 뿐,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발전시킨 흔적은 없다(『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213~217).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목점이 하나 있다. 28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일본 측에 대해 한국 측이 분과위원회에 새로운 지령을 내리겠다는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236~237) 이후 나타난 퇴거강제 대상자의 확대는 위 위원회에서 밝혀진 한국정부의 새로운 지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일 양국의 최초 초안

본회의의 상정과 그 토의를 거쳐 11월 30일 재개된 제12차 분과위원회로부터는 실무적인 토의에 박차가 가해졌다. 동 위원회에서는 영주권 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재산반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검토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¹³(『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75~787). 이에 따라 13차(12월 3일), 14차(12월 6일), 15차(12월 7일) 위원회에서는 위 구체적인 내용들을 토의하는데 필요한 일본 측 각 관련 기관의 실무적 설명이 진행되었다¹⁴(『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789~801(제13차), 802~814(제14차), 815~827(제15차)). 그런 가운데 제13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들에 대해 국민등록을 시킴으로써 영주허가를 낼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등록하지 않는 자에 대한 영주권 허가의 길을 봉쇄할 의도를 공식화시켰다. 65년에 귀결된 재일한국인들의 ‘재일성’의 핵심의 하나는 한일 직접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예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한일 직접교섭에 들어가고 나서 재일한국인들의 퇴거강제를 비롯한 본국귀환 방지를 중요시하던 한국 측이 영주허가 봉쇄라는 동 목적에 역행하는 주장을 편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가정체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그 정체성은 일본국적 상실에 따른 재일한국

13. 또 동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지문채취에 대한 생각이 전해졌으나 그에 대해 한국 측은 답을 보류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14. 각 위원회에서의 주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3차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은 강제퇴거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령 24조 중의 각 조항의 설명, 다음 14차 분과위원회에서는 처우를 위해 운수관련(선박, 수선), 통산관련(광업), 법무관련(공중인), 외자관련, 공무원, 특허 등에 관해 재일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생각, 또 15차 위원회에서는 수출무역과리령, 증권거래, 수산, 이민, 전과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이루어졌다.

인들의 국적선택을 필연적으로 한국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영주권 허기는 애당초부터 그 대상이 될 리가 없었다. 더구나 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영주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자는 명확한 북한 지지자 또는 적어도 한국에 비판적인 자임이 예상되므로 영주권 상실에 따른 거주권 불안정 속에서도 그들이 한국귀환이라는 선택을 할 리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국적 소유자의 대거 본국귀환이라는 한국 측 염려가 없는 조건 하에서는 한국 측은 그 두 번째 국가정체성으로 인해 요구될 재일한국인들의 한국국적 취득 확대를 위해 영주권 부여라는 미끼를 노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제16차 분과위원회(12월 12일)에서는 본국정부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이 달렸으나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협정 안이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되었다.

<표 4>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최초 협정안

국적	1945. 8. 9 이후 한일 양 국민 간의 신분상의 행위에 의거해서 각 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에 관해서 그 효력을 승인한다. 단 2중국적,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비하기로 한다.
거주권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한국정부는 등록을 실시하여 선량하고 일본법률을 준수하는 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실시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에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등록증명서 보유자에게는 일본정부는 개별 심사 없이 또 수수료 없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대우	영주권자는 참정권을 제외하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익 또는 자격을 계속 보장받을 것으로 한다. 단 일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권익에 관해서는 양국정부 협의로 일정한 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귀국 시의 재산처분 및 반출	-본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귀환 시 소유한 재산에 관해 세금 부가 없이 처분하고 일정한 동산(動産)을 휴대할 수 있다. -한일양국은 위 실행에 관한 종류, 수량은 밀수·마약·폭발물 등의 운반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소유 현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적당한 송금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퇴거강제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본 협정 발효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하의 해당자를 제외하고 퇴거강제를 하지 않기로 한다.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해진 자. -한국정부로부터 퇴거강제를 명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자.

자료: 이하 수록된 초안(『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55~858)에서 일부 저자가 고쳐, 인용.

교섭당사자가 내놓은 한국 측 최초의 협정 안 속에서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기술이다. 동 초안에서는 ‘신분상의 행위에 의거해서 각 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에 관해서 그 효력을 승인한다’는 등의 애매한 기술만이 있을 뿐, 회담 전에 한국 측이 중요시하던 한국국적 확인 등의 명확한 기술이 없다. 동 문제를 생각하는 데는 12월 30일자로 교섭 책임자이던 유진오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참고가 된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28~637(한국어), 638~643(영문)).

동 보고서 속에서 유진오는 일본 측이 평화조약 발효 시 일본국적 상실=한국국적 취득을 주장하고 있음을 전하고 그에 대해 한국 측은 국적 및 귀화는 국내법의 문제이며 국제교섭의 의제가 아니므로 한국정부로서는 동 교섭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처우 및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논의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 측이 이 단계에서 한국국적 명시보다 현실적인 대우문제에 무게를 둔다는 일견 ‘소극적’인 자세에 전환한 것은 바로 국적문제의 성격이 달라진 점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한일 직접교섭 전 한국 측에게 국적문제라고 함은 일본국적과 그에 따른 국적선택권 부여의 봉쇄 문제였으나 그것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에게 국적문제는 굳이 밀고 나가야 하는 과제가 이미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국적의 명기 요구는 일본 측의 주장에 나와 있듯이 병합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으로 인해 ‘일본국적 상실’ 운운의 표현을 유발할 우려가 강했다. 따라서 이미 일본 측 정책으로 인해 평화조약 후의 일본국적 상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그것을 명기하는 것은 한국 측으로서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동 한국 측 안 중 다음으로 주목될 변화는 퇴거강제에 관한 조항이다. <표 3>에서 언급했듯이 본회의 상정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측은 공산주의자를 빼고는 일괄 재일한국인의 퇴거를 무기한 불가능케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동 초안에서 한국 측은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은 자의 퇴거강제를 허용하는 것, 또 그 이외에도 퇴거 유예기한을 ‘일정기간’으로 삼는 등 큰 폭의 타협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한편 본회의 보고서에서 ‘폭력으로 인한 일본정부 전 폭을 기도한 자’로 되어 있었던 퇴거 대상자를 ‘한국정부가 명한 자’로 함으

로써 그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했다. 재일한국인들의 퇴거 인수를 바라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정부가 퇴거를 명하는 대상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만이였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일본정부 전폭을 기도한 자’가 ‘한국정부가 명하도록 요구한 자’로 바뀐 것은 퇴거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은 재일한국인 중의 공산주의자 퇴거 실현을 위해 기타 일반 재일한국인의 퇴거가능성을 흥정재료로 이용하려고 한 한국 측 의도를 짐작케 한다.

위와 관련해서 거주권 조항에 관해 한국 측은 등록을 거부한 자에 대한 취급에 관여하지 않는 생각을 일본 측에 천명했다. 사실상 그들의 거주권을 일본에 일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셈이었다. 비록 본국승인이 이루어진 전이었으나 한국 측은 그 최초의 초안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당정부라는 국가정체성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재외국민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버리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12월 15일 열린 17차 위원회에서도 전 번에 한국 측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생활보조, 국적, 재산반출, 퇴거 등에 관한 추가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에 관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41~854). 그런 가운데 일본 측은 퇴거강제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한국 측에 ‘사전 연락’ 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퇴거강제가 일본의 일방적 주권행사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물론 그에 대해 한국 측은 ‘사전에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퇴거에는 한국 측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런 토의를 거쳐 제18차 위원회(12월 18일)에서는 일본 측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제안’을 제출했다. 그 요점과 그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일본 안에서 처음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귀환 시의 취급기간 등에 관해 각각 1년 등, 구체적인 기한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 측이 영주허가를 자손들에 대해 적용할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점도 동 토의에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제안’의 요점과 한국 측 견해

	12월 18일 일본 측 초안	한국 측 견해
국적	재일한국인의 일본국적 상실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해서는 각각 당해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일본국적 상실’ 운운의 기술은 삭제해야 함.
영주권	1) 영주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한국 측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하기로 한다. 2) 영주신청이 있을 때는 외국인등록령에 따른 정식 등록자에 한하여 허가를 인정한다. 3) 영주신청에 관해 2000엔의 수수료는 규정하지 않는다. 4) 영주허가 신청기간은 평화조약 발효 후 1년으로 한다. 5) 영주허가 자에도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퇴거시킨다.	-제4항의 영주허가 신청 기간 1년은 도저히 무리. -영주허가자의 자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5항 영주허가자의 퇴거 규정은 삭제해야 함.
퇴거강제	1) 퇴거강제 대상자(나병환자, 정신병환자, 생활보호자 등)가 있을 경우는 한국 측에 사전에 연락한다. 2) 폭력혁명 분자의 퇴거강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국 측 요구하는 자도 포함해야 함.
처우	1) 국민고유의 권리로 국제관례 상 인정되는 참정권, 공무원, 일본선박 소유권 등은 일본국적 상실과 함께 상실된다. 2)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에서 일반외국인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인정하나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로의 양도는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 인정하지 않는다. 3) 생활보호를 받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
귀환자의 재산 반환 및 송금	1) 하물 반환은 현행 특별 취급으로 한다. 2) 송금은 현행 환 관리 하에서 특별 취급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3) 특별 취급기간은 평화조약 발효 후 1년으로 한다.	-제3항의 특별취급 기간 1년은 너무 짧음.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79~882(일본 측 초안), 866~878(한국 측 견해)).

4. 일본 측의 양보자세와 한국정부의 의견

한일 예비회담은 소위 일본 측 역청구권 주장으로 인한 대립의 불씨를 안으면서 12월 4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끝났으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분과위원회는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그 이유가 이듬 해 4월 28일의 대일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특히 일본 측 사정에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 동 위원회는 12월 19일 제19차 분과위원회에서 위의 18차 위원회에서 일본 측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응답, 21일의 제20차 분과위원회에서는 한

<표 6> 12월18일자 일본 안으로부터 동 22일자 일본 측 신 안까지의 변화 요지

	18일자 일본 안에 대해 제19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낸 의견	21일자 일본 측 신 안 중의 변화 부분의 요점(20차 위원회 제출)	22일자 일본 측 신 안(21차 위원회 제출)
국적	국적취득 상실은 각 당해국 국적법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재일한국인의 국적의 취득 상실에 관해서는 양국은 다른 일방의 국내법에 의한 결정을 존중한다.	20일자 안과 같음.
영주권	-제5항은 삭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 좋다.	-신청기간을 2년으로 한다. -생활보호자는 3년 이내의 기한부로 거주권을 부여.	-신청기간은 별도 협의. -제6항목으로 퇴거강제 항목을 신설하여 한국 측은 일본 측과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 -생활보호자에게는 3년 이내의 기한부 거주권을 부여 항목을 삭제.
퇴거 강제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로 하는 것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대상자를 퇴거시키도록 조치해야 함.	-생활보호자 속에서 대상자는 일정 기간 한국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나병, 정신병 환자는 제외).	퇴거강제 항목은 독립항목으로 하지 않고 삭제.
대우	-상속과 한국인 간의 양도를 일정기간 인정해야 함. -생활보호도 일정기간 인정해야 함. -제1항에 있는 ‘일본국적 상실과 함께’는 빼야 함.	-제1항에 있던 ‘일본국적 상실과 함께’는 삭제. -기득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기간 계속 향유를 인정한다. -생활보호 수급자격을 평화조약 발효 후 1년간 은혜로서 인정한다.	-기득의 광업권에 대한 항목을 내부의견 조율 중을 이유로 잠정 삭제. -생활보호 수급자격을 평화조약 발효 후 1년간으로 하는 항목 삭제.
귀환자의 재산 반환 및 송금	-	18일자 안과 같음.	-제2항으로 인양 하물에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음을 명기. -특별 취급 기간을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기간으로 했음.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86~893(제19차 위원회에서의 한국 측 의견, 921~925(21일자 일본 측 신 안 중의 변화 요점), 913~916(22일자 일본 측 신 안)).

국 측 의견에 따른 일본 측 수정안의 재 제출, 또 22일 열린 21차 위원회에서 또 일본 측이 또 다시 신 안을 제출하는 등 일본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들 요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된다.

18일자 일본 측 초안으로부터 21일자를 거쳐 22일자 일본 측 초안으로 귀결된 일본 측 양보는 다음과 같다. 국적조항에 관해서 ‘일본국적 상실’ 운운의 직접적인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한국인이 한때 일본국적을 취득했다는 노

골적인 표현을 없애고 싶었던 한국 측 의견을 존중하여 국적확정은 양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만을 규정한 것. 또 영주권에 관해서 한국 측 신청기한을 3년으로 할 주장에 대응하여 1년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한 것. 영주허가자의 퇴거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한 한국 측 요구에 대해 20일자 안을 거쳐 결국 22일자 신 안에서 생활보호자에 관해 없앴다는 것. 또 자극적인 의미를 가진 퇴거강제 항목을 없애고 그것을 영주권 조항 중의 1항목으로 함으로써 그 지위를 ‘격하’시킨 것. 기타 대우에 관해서 기득권의 일정한 기간의 유지를 주장한 한국 측 요구에 대해 광업권이나 생활보호를 일단 21일자 안에서 각각 ‘일정기간’, ‘1년’으로 함으로써 조건부나마 그들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¹⁵ 또 본국귀환 자에 대한 휴행 동산에 대한 면세를 명기하며 그 특별 취급에 관해서도 ‘1년’을 ‘일정기간’으로 함으로써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 등이 그 양보 내용들이었다.

또 이런 일본 측 타협자세는 동 제21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자에 대한 퇴거강제 규정의 삽입요구에 관해 그것이 양국의 ‘최고외무정책’이므로 비밀사항으로서 실행할 것을 약속했던 점에도 나타났다. 일본 측이 말한 ‘최고외무정책’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그것이 인권과 생명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국내의 반발을 두려워한 일본 측이 비밀리에 진행시켜야 할 사정을 드러낸 인식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측 타협자세로 인해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동 22일에는 국적, 영주권, 처우, 인양자의 하물반출에 관해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으므로 내년 구체적인 세목 토의에 들어갈 것이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밝혀졌다(『제1차 한일회담 (1952. 2. 15~4.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885). 유진오 대표도 12월 30일 법적지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점점 성의를 보였음을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¹⁶(『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15. <표 6>에서 정리했듯이 동 제안은 22일자 신 안에서 일단 삭제되었으나 이것이 동 문제에 대한 타협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은 이후의 교섭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16. 동 평가에는 법적지위와 함께 기타 선박문제도 포함되고 있다.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30).

새해가 밝아진 52년 1월 16일 열린 제22차 위원회에서는 51년 말 일본 측이 제출한 안에 대한 한국 측의 본국과의 협의결과가 전해졌다. 한국 측은 총론적으로 일본 안이 재일한국인의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하와 같이 각 항목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 그와 함께 동 23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 의견 표명에 대해 일본 측이 밝힌 견해의 요점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2일의 의견표명에서 한국 측 교섭당국이 본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제시하던(<표 2>)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기술방식이 그대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측은 정식으로 한국국적 확정의 명기를

<표 7> 제22차 및 제23차 위원회에서 표명된 양국 의견

	제22차에서의 한국 측 의견	한국 측 의견에 대한 제23차 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의견
국적	한국 측 안 대로 규정해야 함.	한국 측 안에서는 국회동의가 어려우므로 작년 12월의 일본 안을 원칙으로 하고 싶음.
영주권	-허가는 직계비속에 과급하도록 해야 함. -교통의 어려움, 무지(無知)등으로 인한 미등록자의 구제조치를 해야 함. -생활보호자는 영주권을 받아도 퇴거강제 대상자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 안대로 실행 1년 이상 자 이외는 일정기간 퇴거시키지 않음을 명기해야 함.	-직계비속에 대한 과급은 장래 무시할 사례가 발생할 것은 없다. 장래문제이며 통상항해조약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빼야 함. -미등록자라도 단순절차 위반자는 너그럽게 대처. -빈곤자도 악질이 아닌 이상 퇴거는 시키지 않으므로 관리령의 퇴거 사유를 인정하기 바람.
대우	-제1항에 있는 ‘참정권, 공무원, 일본선박소유하는 자격 등’의 ‘등’은 삭제해야 함. -제2항에 있는 ‘현재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은 ‘권의 또 자격’으로 하여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기간 생활보호, 광업권도 인정해야 함.	-‘등’의 삭제는 국민고유의 권리가 참정권, 공무원, 선박소유자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중대한 이해손실은 없음으로 재고 희망. -‘권의 또는 자격’은 범위가 확장하여 해석 상 의문이 생김. 생활보호는 1년 계속 시키므로 일본 측 입장을 양해하기 바람.
귀환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	-송금을 원칙으로 해야 함. -처분재산의 이득에도 비관세조치를 희망. -귀국자에 대해 특별고려, 즉 피 생활보호자에 대해 귀환자금의 지불을 추가규정.	-귀국자의 양도이득에 대한 면세는 국제관례가 없으므로 어려움. -빈곤자의 귀환에 대해 ‘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자.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26~940(제22차 위원회에서의 한국 측 의견), 941~948(제23차 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의견)).

피할 방침을 공식화시킨 것이었다.

한편 한국 측은 위 의견에서 생활보호자의 귀국에 대한 일본 측 비용부담을 새롭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견 빈곤자의 퇴거강제를 인정하듯이 보이는 동 요구에는 한국 측의 고민이 깔려 있었다. 앞서 언급한 12월 30일자 유진오 대표의 본국 보고는 빈곤자에 대한 영주권 확보와 생활보호 계속 요구를 둘러싼 고민을 전하고 있다. 즉 동 보고는 빈곤자에 관해 생활보호의 수급여부가 퇴거대상자의 기준이 될 것을 보고하여 혹시 영주권의 확보, 즉 퇴거강제를 막기 위해 생활보호 중지에도 동의하면 재일한국인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이 공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우려 등을 나타내고 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633~634). 따라서 한국정부가 52년 초 빈곤자의 귀국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귀국 후의 한국 측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비용을 일본 측에 부담시킴으로써 결국 퇴거강제를 막기 위한 방법론적 의미가 강했다고 보여 진다.¹⁷

그러나 동 요구는 일본 측의 재일한국인 감소 정책의 하나가 될 위험성을 내재했었다. 실제 일본 측은 당초 한국 측의 동 요구에 대해 제22차 위원회에서 ‘언어도단’이라고 반발했으나 다음 23차 위원회에서는 ‘제 편의의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귀국 빈곤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은근히 인정했다. 일본 거주에 따른 비용부담을 생각할 때 그들의 귀국 비용의 부담은 결코 일본 측에 불리한 것만이 아니었다.

기타 한국 측이 동 22차 위원회에서 실행 1년 이상자의 퇴거강제는 제약 기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타협적 자세를 보인 것도 기억할 만하다. 일본 측 역시 협정 명기는 피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영주권 허가의 방침을 천명했다. 평화조약 발효 이전의 교섭은 양국의 타결의사에 따라 확실히 해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17. 회의록에서는 한국 측이 동 요구를 한국인의 감소 책으로서 제안한 기록이 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37).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귀환을 원하지 않았던 한국 측이 참된 의도로서 그것을 언급했다기보다 비용부담을 수락시키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5. 한일 양국의 신 안과 그 후의 토의 내용

1월 24일 열린 제24차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 측이 신 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과 그에 대한 토의를 정리하면 <표 8>과 같이 된다.

<표 8> 1월 24일 한국 측 신 안과 그에 관한 논의 내용

	한국 측 신 안	한국 안에 대한 논의 내용
국적	1945. 8. 9 이후의 혼인, 입양, 인지 등 신분상의 행위로 인해 각 정부가 이미 행한 조치에 대해 상호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일본: 이하로 수정한다. '한일양국은 재일한국인은 대한민국국민이며 일본국민이 아님을 승인한다. 1945. 8. 9 이후 양국민 간의 신분상의 행위로 인해 양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승인한다.'
영주권	1) 영주허가 신청자는 한국 측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한다. 2) 신청자 중 종전 전으로부터 전거주자에 대해 일본정부는 영주를 허가한다. 3) 신청 시의 수수료는 무료. 4) 영주허가 효력은 영주허가자의 직계비속에 미친다. 5) 영주허가 자에 대한 퇴거강제는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기간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한다.	-직계비속에 관해 일본: 동의. -신청 일본: '종전 전으로부터 거주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자. 한국: 동의. -퇴거 일본: '사전'은 삭제 하여 '협의 또는 연락'으로 하자.
대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국제관례 상 국민고유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인 참정권, 공무원, 일본선박 소유하는 자격 등은 상실한다. 2) 현재 향유하고 있는 기타의 권익 또는 직업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 계속 인정한다. 단 일정기간 경과 후는 일반외국인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에 관해서 일본: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도 상실한다'고 하고 싶다. 2) '권익 또는 직업' 표현에 대해 일본: '권익'은 막연하므로 '권리'로 하여 세목은 따로 협의하기로 하자. 한국: 생활보호, 교육 등이 배제된 우려가 있음. 일본: 포함되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음. 결국 '권리 또는 직업'으로 하기로 했음
귀환	1) 일정한 기간 내의 귀환자는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또 세금부담 없이 동산을 휴행할 수 있다. 2) 휴행하는 동산에 관해선 마약, 밀수, 폭발물 방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한다. 3) 귀환자는 현금을 송금할 수 있다. 4) 생활보호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귀환할 경우는 일본은 귀환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4)에 관해서 일본) -재일의 귀환의 책임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므로 한국 측이 1년에 몇 명 인수 하는가 밝히면 고려. -'양국정부는 재일의 귀환에 필요한 편의를 공여한다'고 수정하자.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58~961(한국 측 신 안), 949~957(논의 내용)).

24일 한국 측 안과 그에 대한 양국 토의를 거쳐 재일한국인 문제는 국적 조항에 ‘일본국민이 아님’ 운운의 어구를 설정하는 문제, 강제퇴거와 그와 얽힌 빈곤자 중의 자발적 귀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 그리고 대우 문제 중의 어구 표현 등에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퇴거강제에 관해서 한국 측은 그 대상자의 분류별 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일정기간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움직임 보였다. 일본 측은 그에 대해 ‘사전’의 삭제와 동시에 ‘협의 또는 연락’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단지 통보만을 뜻하는 ‘연락’을 가함으로써 퇴거문제 만큼은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빈곤자의 귀환 시의 편의제공에 관해서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일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책임도 동시에 넣도록 맞섰다. 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 측은 본국의 동란으로 인해 빈곤자의 인수는 도저히 약속하지 못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준비는 없다고 말해 빈곤자의 본국 귀환을 사실상 거절했다. 또 대우 문제에 관해서 상실될 권리를 참정권, 공무원, 일본선박 소유권에 한정하고 싶은 한국 측과 그 범위 확대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던 일본 측 대립, 또 일정기간 기득권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권익’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해석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한국 측과 ‘권리’로 포함함으로써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싶었던 일본 측 대립의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

1월 26일의 제25차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제안’을 다시 제출, 또한 29일의 제26차 위원회에서는 그를 약간 수정한 안을 추가 제출했다. 그들을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된다.

<표 9> 25일, 29일 안의 토의를 거쳐 남은 대립 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퇴거강제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은 ‘퇴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 또는 연락’으로 표기함으로써 동 문제에 관한 한국 측과의 접촉은 그 실시에 관한 사항 토의를 위한 것에 한정됨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에 대해 한국 측은 퇴거 대상자의 분류별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와 그에 맞섰다. 또 대우 문제에 관해서도 상실권리의 한정 조항인 1)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확대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던 일본 측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한국 측, 그리고 영주권 소유자의 기득권 계속 조항인 2)에 ‘원칙’을 넣음으

<표 9> 1월 26일자 일본 측 안 및 29일자 일본 측 신 안과 그에 관한 토의 내용

	1월 26일자 일본 측 안	29일 신 안에서의 수정 부분	29일 신 안에 대한 토의 중의 주목점
국적	1) 일한양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이고 일본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승인한다. 2) 일한양국은 이 협정 효력 발생될 까지 양국국민 간에 취하게 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양국의 국내법에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효력을 승인한다.	같음. ¹⁸	‘승인’을 ‘확인’으로 하기로 양국 합의.
영주권	1) 영주허가 신청자는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한다. 2) 신청자 중 종전 전으로부터 계속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주를 허가한다. 그럴 경우는 절차, 수수료 적용되지 않는다. 3) 영주허가 자 중 일정기간 내에 퇴거대상자가 있을 때는 양국정부는 퇴거의 실시 필요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연락하기로 한다.	1) 같음. 2) 같음. 3) 같음.	1) ‘증명서’를 ‘등록 증명서’로 수정하기로 합의. 3)에 관해서 한국 측은 이하 분류를 요구 -1년 이상의 실형자 :통고 정도. -폭력혁명 분자 :입증자료 제출. -선의의 퇴거자 :진정한 협의.
대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국제관례 상 국민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참정권, 공무원, 일본선박을 소유하는 자격 등을 상실한다. 2)본 현정 발효 시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일본국법령에 의하여 일반외국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서 계속 인정한다. 단 상속, 일본인 이외의 양도는 원칙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1)같음. 2)두 줄 짜 ‘자격’을 ‘직업’으로 수정. 또 문말에 ‘세목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를 보충.	한국 측이 이허를 주장. 1)의 ‘등’은 범위 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2)의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인상을 주므로 삭제.
귀환	1) 일정 기간에 귀환할 때 휴대하는 동안에 관해서는 하등의 관세를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2)동산의 종류, 수량에 관해서는 무역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한다. 3)현금의 송금방법은 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한다. 4)생활보호자는 본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귀환할 경우는 일한양국정부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1) 같음. 2) 같음. 3) 같음. 4) ‘3년 이내’를 ‘일정기간 내’에 수정.	-제2, 3항에 있는 각각 무역관리목적, 환 관리 목적을 삭제하기로 합의. -한국 측이 제4항의 ‘일한(日韓)양국’의 ‘한(韓)’을 빼고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69~972(26일자 일본 측 안), 981~985(29일 신 안에서의 수정 부분), 973~980(29일 신 안에 대한 토의 중의 주목점)).

로써 예외 가능성을 남기고 싶었던 일본 측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한국 측 사이에 두 가지 표현상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18. 표 중의 ‘같음’은 협정문 자체가 똑같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상 문제로 된 부분에 관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보호자 귀환 시의 편의제공에 대한 비용분담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동 문제는 일본 안에 나타났듯이 한국 측 책임도 명시하려는 요구로 인해 표면상의 대립이 남았으나 일본 측은 그 토의과정에서 국내에서의 국회통과 등을 이유로 기분만으로도 ‘한국’을 남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79) 운영상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액부담을 할 의사가 있음을 한국 측에 내비쳤다.

52년 1월 18일 주지의 평화선이 선포되었다. 1월 31일에 열린 제27차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평화선 선포에 따른 일본정부 내부의 분위기 악화를 전달하여 이후의 교섭에서 많은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88). 그러나 이하 보듯이 결국 법적지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 후도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것 역시 평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동 문제만큼은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일본 측 속사정을 나타내는 대목이었다. 동 27차 위원회에서 제31차 위원회까지 거둬들인 협의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0>에서 정리했듯이 29일의 제26차 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출한 안에 대한 제27차(1월 31일)로부터 제31차(2월 7일)까지의 위원회 토의에서 다시 몇 가지 진전이 이루어졌다. 영주권에 관해서 사실상 직계비속에 허가를 줄 조항의 규정이 정해지고 또 퇴거강제에 관해서도 ‘연락’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뜻한 표현의 삭제를 일본 측이 수락했다. 또 대우 문제에 관한 표현에 관해서도 양국은 ‘등’과 ‘원칙’ 표현을 서로 하나씩 양보함으로써 타결을 봤다.

그러나 이런 타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측은 퇴거강제에 관해서만큼은 그것이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또 귀환자에 대한 면세기간 및 귀환 빈곤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책임분담 표기와 그 기간 역시 대립상태에 머물렀다.¹⁹⁾

19. 결국 풀리지 못했던 문제들은 동 제31차 분과위원회에서 그 후 양국 대표자 간 협의나 각 전문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했으나 그들 토의기록이 없으므로 어떤 논의가 이

<표 10> 제27차부터 제29차 위원회까지의 토의내용의 요약

		한국 측	일본 측
영주권	제1항 일정기간	2년으로 합의.	
	제2항 영주허가 범위	(특별이 새로운 주장은 없음)	전전 거주자는 미성년자도 허가. 협정발효 후 출생자도 고려.(제27차)
	제3항 '연락' 표현	'협의 또는 연락' 중의 '연락'은 삭제.	동의.
영주권	제3항 일정 기간	-반(半)영구.(27차) -10년. 필요에 따라 양국 합의로 연장가능으로 함.(28차) -일본 안이면 필요할 때만 협의로 되므로 '당분간 그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함. 협의 방법은 별도 협의. 다만 빈곤자 추방은 5년간은 실시하지 않고 그 후 5년은 협의, 또 1년 이상 실행자와 폭력혁명자는 10년간 사전연락.(제30차) -'협의'를 삭제하는 것은 언어도단.(31차) ²⁰	-2년.(27차) -3년이 합리적이거나 기간 명기는 하지 않고 '당분간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에 응하여 협의함'으로 하는 것은? (29차) -'별도 협의'는 주권제한의 인상이 있어 불가능. 다만 신사협정으로 약속.(30차) -동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일본주권 제한이므로 삭제.(31차)
	대우	제1항 '등'	그 삽입에 한국 측 합의. (제27차)
귀환	제2항 '원칙'		삭제로 동의.(제28차)
	제1항 일정 기간	-5년 정도.(27차)	-2년 내지 3년.(27차)
귀환	제4항 편의 제공	-편의의 제공은 일본이 하여 인수에 관해 한국 측은 협력으로 한다.(27차) -일본의 삭제 요구는 무리.(28차) -편의 제공 기간은 5년.(28차)	-재외국민 보호를 일반적으로 일본에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자.(27차) -기간은 2년 내지 3년(28차). 3년이 한계.(29차)
	협정효력 발생 날짜	평화조약 전에 조인되면 그렇게 하고 후가 되면 명확한 날짜를 기입하자.(29차)	동의.(29차)

자료: 다음 문서 중의 각 위원회 회의록에서 저자가 발췌,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986~993(제27차), 994~1004(제28차), 1005~1013(제29차), 1014~1019(제30차), 1020~1026(제31차)).

투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20. 다만 한국 측은 1년 이상 실행자는 통고(通告)정도, 폭력혁명 분자는 입증자료 제출, 빈곤자는 사실상 합의(合議)로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다면 삭제 가능이라는 추가적 타협자세를 보였다. 그에 대해 일본 측은 빈곤자, 정신병, 나병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퇴거, 혁명분자는 사후적 입증자료 제출 또는 연락 정도, 선의의 빈곤자는 연락 정도라는 조건을 달아 대립은 여전했다.

6. 1952년 4월 1일자 양국공동 초안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 안”

한일회담은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으로서 정식 개시되었다. 회담 개시 후 열린 제32차 분과위원회(3월 18일)에서는 수석대표 간의 합의에 기초해 본회의에 상정할 협정 안의 성문화(成文化)작업이 일찍 시작되었다. 일본 측은 그를 위해서 동 위원회에서 ‘재일한인의 국적 및 조치에 관한 일한 협정 안’을 제출, 그 후 제35차 위원회까지 토의가 계속되었다. 그 안의 내용과 그 토의 과정의 주된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제36차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작성된 4월 1일자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 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이 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 분과위원회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기안한 협정 안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제2조 제1항 재일한국인의 국적확인 문제에 관해 한국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일본국민이 아님’ 등의 표현을 일절 삭제한 점, 또 퇴거강제에 관해 양국 협의 기간을 각각 3년, 5년으로 양국 주장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본회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 것. 또 빈곤자의 자발적 귀환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은 일절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점들이다.²¹ 그들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에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한국국적 소지와 영주권을 결부시키는 한국 측 방침은 양국 합의점이 되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 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어떤 토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하는 자료는 없다. 4월 1일자 동 협정안이 작성된 후 열린 제5차 본회의(4월4일) 회의록에는 동 협정 안에 대한 논의내용을 전하기는커녕 동 협정 안이 상정되었다는 기록조차 없다²²(『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

21. 다만 회담의 요약 기록인 『韓日會談略記』는 제1차 한일회담 시점에서 동 문제에 관한 미 해결점은 제2조 1항, 제3조 2항, 제5조, 그리고 제7조 중의 사소한 문제와 별도의 협의사항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外務部 政務局, 1960: 42).

22. 동 위원회 회의록은 기본관계, 어업, 청구권에 관한 위원회 보고의 기록만을 전하고 있다.

<표 11> 4월 1일자 공동조안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 안’까지의 변화점

	3월18일자 일본 측 안 중의 요점	이후의 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논점	4월 1일 최종안 중의 주된 변화 점
전문	종전 전부터 일본에 재류하는 한인의 국적확정 또 그 국적 확정에 수반하는 한인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므로 이 협정을 체결한다.	한국: ‘경과 조치’의 수정요구.	‘경과조치’를 ‘특별한 조치’에 변경.
제1조	재일한국인이라 함은 태평양전쟁 종료 후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계속 일본거주의 한인을 말한다.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규정의 필요성 여부.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가 삭제되었음.
제2조: 국적	1)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이며 일본국민 아님을 확인한다. 2) 양국은 이 협정 효력 발생될 까지 양국국민 상호에 공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어떤 일방의 국내법에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효력을 승인한다.	제1항에 관해서 한국: 한국인이 일본국민이었다는 의미를 없애기 위하여 ‘일본국민이 아니다’는 문구의 삭제로서 요구. 일본: 삭제할 경우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삭제에 반대.(=한때 일본국민이었다는 의미를 남기는 뜻)	1) ‘대한민국은 재일한국인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고만 규정. 2) 없음.
제3조: 거주권	1) 영주허가 신청자는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여권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일반외국인에 적용되는 조건, 절차,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주허가 자 중의 퇴거강제에 관해서는 이 협정 발효 후 3년 간 한일양국은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3) 한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9개월 경과 후 전 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빈공자의 퇴거에 관해서 연장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제기할 수 있다.	1)에 관해서 한국: ‘증명서로서 여권에 대신하는...’을 ‘등록증명서’로 함을 요구. 2)에 관해서 퇴거강제에 관한 협의기간의 대립. 3) 한국: ‘기간 연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요구.	1)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로 수정되었음. 2) ‘이 협정의 발효 날부터 3년간(일본주장), 5년간(한국주장)’으로 양론 병기(併記)로 되었음. 3)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음.
제4조: 처우	1) 재일한국인이 이 협정 효력 발생 시에 향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로서 일반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에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한 향유할 수 있다. 2) 전 항의 본인이 사망할 때는 그 권리는 1년 이내에 일본국민 또는 일본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2)에 관해서 한국: 협정 발효 후 일반외국인에게 인정될 경우 불리해지므로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에 한정하는 것에 반대.	1) 없음. 2) ‘1년 이내에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당해 권리의 향유가 인정받고 있는 자’로 변경.
제5조: 처우	재일한국인이 이 협정 효력 발생 시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일반외국인에게는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서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한 종사할 수 있다.	일본: 단지 ‘직업’만이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오므로 ‘공직을 제외’로 함을 요구. 한국: ‘공직’이면 확대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종사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을 제외)’로 ‘직업’ 후에 ‘공무원’을 보충. ²³

<표 11> (계속)

	3월18일자 일본 측 안 중의 요점	이후의 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논점	4월 1일 최종안 중의 주된 변화 점
제6조: 귀환 조항	1) 재일한국인이 이 협정 효력 발생 날부터 3년 이내에 귀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동산(動産)의 휴환에 관하여 면세로 한다. 그 동산의 종류, 수량은 별도 협의로 한다. 2) 전 항의 귀환자가 소유하는 자금은 별도 협의하는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한국은 이 협정 효력 발생 날부터 2년 9개월 경과 후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에 연장을 제기 할 수 있다.	3월 18일자 안에서 이미 '귀환자 중의 빈곤자에 대한 편의 제공 조항'은 삭제되었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단 일본은 이 조항은 보류 중)
제7조: 비준	이 협정은 대일평화조약의 발효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월 28일 발효예정이던 평화조약 발효 후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협정 효력의 공백이 생길 것이 우려됨.	이 협정은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효력은 비준서 교환 날부터 발생한다. 단 제4조 및 5조의 효력은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발생 날에 소급 적용된다.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발췌, 정리(『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1037~1043(3월18일 일본 측 안의 요점), 1027~1036(제32차), 1044~1051(제33차), 1052~1056(제34차), 1057~1066(제35차), 1082~1089(4월 1일자 최종안 중의 주된 변화)). 또 표 중에 삽입한 '(=)'부분은 저자가 보충.

록, 제1~5차』: 1181~1197).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는 일본 측 역청구권 주장으로 인한 격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동 제5차 회의로 끝났으므로 4월 1일자 초안이 진지한 토의에 부쳐진 일은 결국 없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는 36차에 걸친 분과위원회까지의 논의로 인해 한국정부 자신이 인정하듯이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비교적 빨리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봤다”(外務部 政務局, 1960: 42).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국적 취득과 국적선택권 방식 기각에 관해 양국방침이 일치한 것,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 측이 재일한국인이 한때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 일부 공산주의자 송환에 동의하는 등 일본 측

23. 다만 이 항목에 관한 수정에 관해서는 회의록에서는 결국 합의되지 않았다는 기술이 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1080).

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당정부라는 한국 측 국가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자세를 보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4월 28일까지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 변경에 따른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 조급한 사정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실제 일본 측은 동 문제에 관해서는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령의 적용, 즉 퇴거강제 문제를 빼고 한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하 살펴 볼 평화조약 발효 이전의 타결이라는 요구가 사라진 제2차 한일회담 이후의 움직임은 바로 이런 제1차 한일회담의 성격을 역으로 잘 나타낸 대목이었다.

III. 제2차 한일회담 및 제3차 한일회담

1. 제2차 한일회담에서의 토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1차 한일회담에서 동 문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청구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결국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에 따라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재일한국인들의 국적과 법적지위를 확정지으려고 한 당초의 의도는 무산되며 일본의 주권 회복에 따른 그들의 법적지위는 일종의 공백으로 남았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측이 법률 126호를 제정하여 별도로 법 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재류자격이 없는 자를 잠정적으로 재류시킨다는 교육지책을 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2차 한일회담은 청구권을 둘러싼 기본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재일한국인 문제를 조급히 해결할 필요가 사라진 상황 하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또한 동 회담은 한국전쟁의 동향에 따른 유동적인 정치 정세 가운데 진행됨에 따라 짧은 기간으로 휴회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동 문제는 제6차의 분과위원회로 끝났으므로 실질적인 토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제2차 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의 토의는 동 문제에 대한 초기 한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내용을 보였다. 그것은 퇴거강제 문제와 그와 얽힌 국

적확인 문제에 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대일 강경책의 하나로서 그때까지 허용하던 재일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 인수를 제1차 회담 결렬 후 거절하기 시작했다.²⁴

52년 5월 13일 열린 제2차 한일회담 제1차 재일한교 국적 및 처우관계 분과위원회는 바로 위와 같은 대립구도 속에서 열렸다. 일본 측은 4월 28일 현재 460명의 송환대상자가 있음을 밝히고 퇴거강제 권한은 주권국가 고유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그 인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그것을 거절했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그 거절 이유였다. 한국 측은 그 이유로서 해당자가 협정 성립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퇴거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그들의 국적이 미확정이라는 근거를 들었다(『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774~791). 즉 “대응 분석”에서 확인했다시피 회담 개시 전에 재일한국인들의 한국국적 확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한국 측은 제2차 회담에 이르러서는 이번에는 강제송환 인수를 거부하기 위하여 그들의 한국국적 미확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제2차 분과위원회(5월 22일)에서 한국 측의 위와 같은 근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하여 과거 한국 측이 재일한국인을 한국국민임을 확인하고 있었음을 지적, 법률론을 고사하고 정치적 인수를 요구했다. 그에 대해 한국 측은 위 4월 1일자 공동초안에서 한국국적의 확인을 하려고 한 것은 국적 미확인이 때문이라는 점, 일본 측이 재일한국인들을 일본국적을 가진 소수민족으로 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 등록 시 그들의 국적을 ‘한국’, ‘조선’으로 했다는 점들을 들어 재일한국인들의 한국국적이 미확정임을 재차 강조하여 회담성립으로 인한 국적확정까지는 퇴거 대상자의 인수를 하지 않음을 천명했다(『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792~804).

제3차 위원회에서도 일본 측이 주일대표부는 재일한국인들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일본 측도 이를 인정했다는 논리를 들어 국적이 확정되어

24. 일본 측은 동 조치를 회담 재개를 위한 압력으로 보고 있다(外務省, 1953: 22).

있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주일대표부가 한국국민임을 주장해도 그런 사실적 사례는 곧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외교보호권의 설정은 장래의 국적확정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측은 주권행사로서의 퇴거강제는 자유의사로 입국한 일반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이며 재일한국인과 같은 특수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덧붙여 말했다(『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805~815).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동 위원회는 그 후 제4차(6월 5일), 제5차(6월 12일), 제6차(6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나 동 문제에 대한 내용상의 진전은 없다. 기타 제2차 한일회담에서의 주된 논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이 된다.

<표 12>에서 제시했듯이 일본 측은 제2차 한일회담 이후 제1차 회담 상의 타협적 자세를 대폭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영주권 부여 여부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한 점, 퇴거강제 대상자의 영주권 소멸을 천명한 점, 또 전과자는 물론 미성년자까지 그 허가 여부를 보류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자세에서 엿보인다. 일본 측의 자세 전환의 이유는 다음 이유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평화조약 발효 전의 타결이라는 목표가 일단 사라진 가운데 큰 양보를 하기까지 해서 급하게 타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둘째 한국 측의 한일회담 일괄타결 방침으로 인해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한 회담 자체의 타결전만이 없는 탓으로 동 문제 역시 해결 전망자체가 없었다는 것. 셋째 제2차 한일회담 자체가 일본 측 요청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휴회에 돌아간 곳에 보이듯이 원래 일본 측은 동 회담에서 문제를 타결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 요컨대 일본 측에게는 이미 동 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해야 할 시급성도 없었거니와 또 그 해결이 가능한 요건도 성립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동 회담에서 한국 측은 영주권 허가와 재일한국인의 재외국민등록을 연결할 방침을 또 다시 천명했다(『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836). 한국정부로

<표 12> 제2차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주된 논의 내용

	한국 측	일본 측
영주권 부여	(제1차)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은 수락불가. -전과자에 관한 취급 문제는 협정 성립 후 발생자가 대상. (제4차) -전과자, 미성년자에 대한 견해에는 동의하지 못함.	(제1차) -영주권 부여 여부는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 -전과자, 미성년에 대한 부여 여부는 보류. -퇴거대상자의 권리는 소멸. (제4차) -전과자: 일정기한(3년) 거주허가. 그 후 준법하면 연장 또는 부여를 결정. -미성년자: 일정기한 거주허가. 성년 후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 -퇴거강제 대상자: 소멸.
빈곤자 보호	-빈곤은 강제동원이 원인이므로 협정 성립 후도 일본 측이 계속 보호.(제1차) -해외동포는 돈을 벌어 송금하여 본국을 돕는 것이 통례이며 국내에서는 국내빈곤자 지원 우선을 주장.(제4차)	-무제한 보호는 어려우므로 한국 측 인계를 요구.(제1차) -효과적 방법으로 인해 지원계속의 노력은 하나 최악의 경우 한국 측의 보호책임, 인계를 기대함.(제4차)
국적조항 명기	이하 이유로 조약 명기해야 함. (제1차) -일반적 관례인 국적선택권과 달리 협정으로 국적을 결정한다는 점. -재일한국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파악필요. (제5차) -국제적 선례인 국적선택권 부여의 경우도 조약에 명기되었다. -일본의 좌파에서는 제일의 국적귀속을 북한, 남한, 일본, 기타로 한다는 견해도 있고 국적은 명기해야 함.	이하 이유로 조약 명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1차) -재한한국인에 대한 국적은 규정하지 않고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명기한다면 부속교환공문에 규정. (제5차) -국제법상 국가의 분리 독립 시 재한한국인은 명시하지 않고 재일한국인만 조약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주권과 재외국민등록연결문제	(제5차) 이하의 이유로 연결해야 함. -등록은 한국국적 취득의 확인행위이며 일본의 영주권 허가의 요건. -재일동포 파악의 최선의 방법.	(제1차) 이하의 이유로 분리해야 함. -연결시키면 전략적 인상을 준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주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필요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등록을 그대로 영주허가의 요건으로 인정해야 함.
자유귀국	(제3차) 이하 희망 사항을 제시. -재산반출과 송금자유. -일본통화 송금에 대한 특별조치. -공장 등 설비반출에 관한 제한 철폐.	-한국 측 문제점을 밝힐 것을 요망.(제3차) -빈곤자의 자유귀환 시의 송선 비용은 일본이 부담.(제4차)

자료: 다음 문서 중의 각 회의록에서 저자가 발췌, 정리(『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774~791(제1차), 805~815(제3차), 816~829(제4차), 830~839(제5차)).

의 귀속을 거절한 자에 대한 차별은 이미 초기 한일회담에서 확립된 부동의 방침이었던 것이다.

이상 유동적인 정치 정세로 인해 단기간에 끝난 제2차 한일회담은 오히려

그로 인해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잘 나타낸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측은 다른 외국인과 같이 재일한국인들의 재류권 한을 제한하고 싶다는 생각을 영주권 부여 여부의 조건 강화라는 주장을 통해 드러냈다. 한편 원래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항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일한국인 중의 범죄자 인수 거부를 위해 국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또 한국국적과 영주권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했다.

양국의 관심사가 잘 나타난 위와 같은 제2차 한일회담의 내용은 초기 한일회담의 성격이 특수한 역사로 인해 생긴 재일한국인들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2. 제3차 한일회담에서의 토의

일본 측 요청으로 인해 휴회로 되었었던 한일회담은 한국전쟁의 휴전 확정, 또 양국간 어업분쟁의 격화 등의 이유로 53년 10월 재개되었다. 그러나 동 회담이 소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2주 남짓한 짧은 시간으로 결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인해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토의 역시 10월 14일 열린 제1차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에서만 진행되었을 뿐, 진전이 전혀 없는 회담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위원회 벽두 토의된 내용은 동 회담의 성격을 예고하고 있었다.

동 위원회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 요구이던 약 120명의 오무라(大村)수용소 수용자의 석방 요구를 한국 측 퇴거강제자 인수와의 교환조건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에 대해 한국 측은 퇴거강제 조치에는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그 조건을 거절했다. 또한 빈곤자에 관해 일본 측은 자유귀국자에 대한 특별취급을 약속했으나 일본 재류자에 대한 지원 계속에는 거듭 난색을 표시했다. 그에 대해 한국 측은 휴전 성립 직후인 국내에서는 이재민이 다수이므로 재일한국인 중의 빈곤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임을 강조하여 일본 측 지원의 계속을 요구했다(『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 10. 10』: 1226~1240).

회담 벽두에서 퇴거강제의 인수 문제와 빈곤자의 귀환 및 그 지원에 관한 책임 떠넘기기 만이 토의되었다는 사실은 동 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예고하는데 상징적이었다. 즉 동 회담역시 그 역사적 책임의식으로부터 재일한국인 보호를 위해 진행될 회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IV. 결론

이상 한일회담 개시 후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교섭내용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당정부라는 두 번째 국가정체성이 요구하는 과제와 재일한국인들을 ‘집’으로 여긴 양국 정부간의 그 거주권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 측은 영주권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한국에 대한 국민등록과 연결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성을 훼손시키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거주권에 위협을 줄 것을 주장했다. 역사적 특수성을 이유로 재일한국인의 퇴거강제를 거절하면서도 북한지지파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송환을 적극 요구했다. 또한 재일한국인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요구를 하면서도 재일한국인 중의 생활보호에 대한 부담은 일절 거절했다. 한국 측은 “해외동포는 돈을 벌어 송금하여 본국을 돕는 것이 통례”라는 사고방식 아래 재산 반출 등 한국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그 길을 여는 데 애를 썼으나 반출할 재산조차 없는 빈곤자에 대해서는 그 귀국비용의 일부조차 감당하는 것을 거절했다. 심지어 퇴거강제 대상자의 인수를 거절하기 위해 한국국적 미확정이라는 논리까지 펴며 자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초기 한일회담에서 보인 한국정부의 이런 대응들은 유일한 대표정부라는 두 번째 국가정체성이 단지 북한과의 정치적 경쟁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며 재외국민 보호라는 원래 정당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도 남은 것이었다.

일본 측 역시 그 지배로 생긴 재일한국인에 대한 대응을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으로부터 생각한 일은 없었다. 초기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관되게 중시한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재일한국인들의 ‘추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제1차 회담까지의 교섭에서 보인 표면상의 많은 타협은 주권회복 후 그들을 외국인으로서 퇴거강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의도는 다른 대우들에 관해서는 많은 타협을 하면서도 출입국관리령 적용에 관해서는 일절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 측이 요구한 일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에 관해서는 비밀리에 약속하려 했다는 점, 또 빈곤자 등의 퇴거강제에 관해 그 비용부담을 인정하려고 했다는 점, 거꾸로 평화조약 발효로 시급한 해결의 필요가 사라진 제2차 한일회담 이후는 영주권 부여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년에 귀결된 ‘한국’, ‘조선’ 국적 분단에 따른 법적지위의 차이나 거주 권한의 불안정성이라는 주된 ‘재일성’의 요소들은 초기 한일회담에서 확실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차 한일회담 결렬 후 한일회담은 장기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그후 재일한국인 문제는 점점 불거진 북한귀환 문제로 옮겨갔다. 그 대부분이 남한 출신자이던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북한귀환이라는 선택을 한 것은 초기 한일회담에서 보인 일본 측 무책임한 태도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취한 교섭전략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일회담 공식문서>

-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 5~9』.
-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 5. 13~6. 19』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본회의회의록, 1953. 4. 15~30』.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 10. 10』.
外務部 政務局. 1960. 『韓日會談略記』.

<기타>

-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서울: 中央日報社.
도노무라 마사루. 2005.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
류미나 역. 『역사문제연구』 제14호. pp. 105-134.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서울: 선인.
張博珍. 2007. 「韓日會談에서의 植民地關係 清算研究 - 清算消滅의 政治論理를 中心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박진. 2009.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 『아세아 연구』 제52권 제1호. pp. 205-239.
정인섭. 1996.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外務省. 1953. 「日韓關係に横たわるもの」. 『世界週報』第34卷. 第32号. pp. 16-26.
金太基. 1997.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 SCAPの对在日朝鮮人政策1945~1952 -』. 東京: 勁草書房.
飛田雄一. 1980.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在日朝鮮人 - 1951. 9. 8~52. 4. 28」. 『在日朝鮮人史研究』 第6号. pp. 1-11.
吉澤文寿. 2005. 『戦後日韓關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東京: クレイ
ン.

An Analysis on the Negotiation Processes of the Koreans in Japan in the Early Stages (the Preliminary~the Third Talks) of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Goal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Talks and the Logic of the Formation of the Postwar Historical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Chang Bak-Ji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Though the postwar historical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is derived from the special postwar rel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we can say the character was formed directly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is paper discusses the negotiation processes in the early stage of the Talks from the preliminary to the third round of Talks to analyse the influences which the early stage Talks had on the formation of the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the official documents o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In contrast to the many studies on the policies of SCAP and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Koreans in US-occupied Japan, no studies have analysed the negotiations processes comprehensively and accurately, partly because the official documents have not been open for the long time.

Accordingly, a study which clarifies the contents of the early stage negotiations concretely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of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on the formation of the postwar historical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In this paper, it is discuss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Talks, the Korean side's main purposes were twofold; first to maintain the principle that South Korea is the only lawful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econd to secure the permanent residential rights of Koreans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side aimed to restrict the residence of Koreans in Japan by getting the rights to deport them back to South Korea.

And also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postwar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which was finally formed in 1965 had already manifested itself in the early stage of the Talks.

Key Words: the early stage of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postwar historical character of Koreans in Japan, the principle of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ermanent residential rights of Koreans in Japan, the rights of the deportation to South Korea.